

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에 대한
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		처리기간	
① 신고인 (양도인)	법 인 명		사업자등록번호			대표자 성명	
	대표자 생년월일		사업연도		양도연월	전화번호	
	소 재 지					전자우편주소	
② 양수인	성명(상호)	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양도자산 소재지	지 분		양도인과의 관계	
③세율구분	코 드	합 계	국내분 소계	-	-	-	국외분소계
④ 양도소득금액							
⑤ 기신고·결정·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							
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							
⑦ 양도소득기본공제							
⑧ 과세표준 (④+⑤-⑥-⑦)							
⑨ 세	율						
⑩ 산출세액							
⑪ 감면세액							
⑫ 외국납부세액공제							
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							
⑭ 특별징수세액공제							
⑮ 가산세	무(과소)신고	(대상금액, 세율)	(대상금액, 세율)	(대상금액, 세율)	(대상금액, 세율)	(대상금액, 세율)	(대상금액, 세율)
	납부지연	(대상금액, 일수)	(대상금액, 세율)	(대상금액, 일수)	(대상금액, 일수)	(대상금액, 일수)	(대상금액, 일수)
	기장불성실 등	(대상금액, 세율)	(대상금액, 세율)	(대상금액, 세율)	(대상금액, 세율)	(대상금액, 세율)	(대상금액, 세율)
	계						
⑯ 기신고·결정·경정세액							
⑰ 자진납부할세액 (⑩-⑪-⑬-⑭+⑮-⑯)							
⑱ 분납(물납)할세액							
⑲ 자진납부세액							
⑳ 환급세액							
㉑ 환급금계좌	예입처	은행	예금주	계좌번호			

신고인은 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32에 따라 위 내용을 신고하며,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신고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제출서류 및 담당공무원 확인사항	뒤쪽 참조
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

제출서류	1. 매매계약서 1부 2. 감면신청서 1부 3. 그 밖에 지방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	접수일자 (인)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1.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.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	

작 성 방 법

1. 관리번호는 작성자가 적지 않습니다.
2. 이 서식은 사업연도 단위별로 사업소득(「법인세법」 제4조제3항제1호 및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 각 호의 수익사업을 말합니다) 외의 이자, 배당, 주식,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처분이익, 채권매매이익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·건물 및 주식(출자지분 포함)을 양도한 경우에 사용합니다.
3. ①신고인(양도인)란 :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되, 사업자등록번호 내지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과 생년월일을 반드시 적어야 하며, 양도연월은 신고대상인 과세 자산을 양도한 연월을 적습니다.
4. ⑩산출세액 및 ⑬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: 해당 신고분까지 누계금액을 적습니다.
5. ⑭특별징수세액공제란: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이 특별징수한 세액 등을 적습니다.
6. ⑮가산세란: 무(과소)신고란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, 과소신고가산세, 납부지연란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, 기장불성실 등란에는 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.
7. ⑯기신고·결정·경정세액란은 기신고세액(누계금액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합니다), 무신고결정·경정 결정된 경우 총결정세액(누계금액을 말합니다)을 적습니다.
8. ⑰납부할세액란 및 ⑳환급세액란까지: 금회 신고납부할 세액 등을 적습니다.
9. ㉑환급금 계좌란: 송금받을 법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.
10. 음영으로 표시된 칸은 적지 않습니다.